

의안번호	2201099
의 퇴 인	진선미의원
회 답 일	2024. 08. 14.
추계번호	24D139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4조의5 (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·관리) 신설	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제52조1)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·관리하여야 함 - 사상자의 성명, 연락처, 주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 - 사상자의 응급처치 기록 - 사상자를 의료기관 및 임시영안소 등에 이송한 기록 - 사상자의 이동 동선 및 현재 위치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4조의5 (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·관리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제52조(긴급구조 현장지휘)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. 다만,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.

1.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·구조
2.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·장비의 배치와 운용
3.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
4.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
5.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
6.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
7. 현장접근 통제,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,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~⑪ 생략

2. 상세 사유

□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·관리(안 제74조의5 신설)

- 개정안은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·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기록 및 수집, 시스템 구축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재난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·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임시 인력 채용 또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재정소요 예상
- 다만,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·관리하기 위한 임시 인력 활용 또는 정보관리시스템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결정, 임시 인력 활용 시 인원과 기간,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 사업의 내용과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, 소방청의 2023년도 「구급서비스 통계연보」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출동건수는 1,309,614건, 구조인원은 117,771명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